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제출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우리사주조합원의 참여권을 확대하고 원활한 조합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우리사주조합원의 조합원총회 소집 근거를 신설하고, 우리사주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의 업무범위를 확대, 우리사주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에 대한 구체적 방법을 명문화하는 등 현행 우리사주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합원의 조합원총회 소집 근거 신설(안 제12조제3항 신설)

- 현행법상 조합장이 없거나 조합장이 소집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원천적으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할 수 없어 조합 운영이 불가능함에 따라 조합원의 참여권을 확대하고 원활한 조합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조합장이 없거나 조합장에 의한 총회 소집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조합원이 직접 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수탁기관의 우리사주제도 지원업무 명확화 및 업무범위 확대

- 우리사주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수탁기관의 교육·자문에 대한 업무 범위를 구체화(안 제24조의2제4호 개정)
-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해 우리사주 시장매입 등 수탁기관이 조합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의 업무 범위에 ‘조합기금 조성 등 우리사주 취득 및 관리에 수반하는 조합업무 지원 및 대행’을 추가 (안 제24조의2제5호 신설)

다. 지배관계회사 개념의 명확화(안 제9조제1호, 제2호 개정)

- 특정 우리사주조합은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와 함께 지배관계회사 소속 근로자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나 지배관계회사의 지분 요건이 지분을 직접적으로 소유하고 경우 외에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불분명하므로 조합원 자격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조합원 자격의 빈번한 변동으로 인한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분 요건을 구체화하고 지분을 ‘직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로 명시

라. 증권금융회사 관련 인용조문의 정비(안 제24조의6제4호 개정)

- 현행 법령에서 규정하는 증권금융회사 관련 인용조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4조 전체이므로 “제324조제1항”을 “제324조”로 문구 정비

마. 우리사주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 방식 구체화

- 우리사주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시 정해진 기간 동안 의사표시 또는 위임 요청이 없는 주식의 의결권은 해당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 방법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므로 의사표시 또는 위임 요청이 없는 주식의 의결권은 의사표시가 있는 나머지 주식 수의 찬성·반대 비율에 따라 산정하도록 구체적 방법을 명시적으로 규정(안 제28조 제1항제2호 및 제28조제2항제2호 개정)

- 안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안 제28조제3항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및 제2호 중 “소유”를 각각 “직접적으로 소유”로 한다.

제1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전단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③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가 제2항의 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하면 총회 소집을 요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총회를 소집·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24조의2제4호 중 “도입을 위한”을 “도입 및 운영 관련”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조합기금 조성 등 우리사주 취득 및 관리에 수반하는 조합업무 지원 및 대행

제24조의6제4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4조제1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4조”로 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아니하도록”을 각각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

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지배관계회사) 법 제34조제 1항제2호에 따른 지배관계회사 (이하 “지배관계회사”라 한다)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9조(지배관계회사) ----- ----- ----- -----.
1. 조합이 설립된 주식회사(이하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라 한다)가 발행주식 총수의 1 00분의 50 이상을 <u>소유</u> 하고 있는 비상장법인	1. ----- ----- ----- <u>직접적으로</u> <u>소유</u> -----
2. 제1호의 비상장법인이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 을 <u>소유</u> 하고 있는 비상장법인	2. ----- ----- -- <u>직접적으로 소유</u> -----
제12조(총회의 개최) ① · ② (생 략) <신 설>	제12조(총회의 개최) ① · ② (현 행과 같음) ③ <u>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u> <u>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가 제2</u> <u>항의 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u> <u>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하면 총회</u> <u>소집을 요구한 조합원의 대표가</u> <u>총회를 소집 · 개최할 수 있다.</u> <u>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u> <u>의 직무를 수행한다.</u>
③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대의	④ -----

원회 소집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총회”는 “대의원회”로,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제24조의2(수탁기관의 업무) 법 제43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 3. (생략)
4. 우리사주제도 도입을 위한 교육·홍보 및 자문
<신설>

제24조의6(우리사주 대차거래 중개·주선업무 금융회사) 법 제43조의3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차거래 중개·주선업무를 영위하는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 3. (생략)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4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증권금융업무 인가를 받은 자

----- 제2항 및 제3항-----

-----.

제24조의2(수탁기관의 업무) -----

-----.

1. ~ 3. (현행과 같음)
4. ----- 도입 및 운영 관련 -----
5. 조합기금 조성 등 우리사주 취득 및 관리에 수반하는 조합업무 지원 및 대행

제24조의6(우리사주 대차거래 중개·주선업무 금융회사) -----

-----.

1. ~ 3. (현행과 같음)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4조-----

제28조(조합의 의결권 행사) ①

조합의 대표자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때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된 주식의 의결권은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사한다.

1. (생략)

2. 제1호에 따른 기간 동안 의사 표시 또는 위임 요청이 없는 주식의 의결권은 해당 주주총회의 참석 주식 수에서 의사 표시가 없거나 위임 요청이 없는 주식 수를 뺀 주식 수의 의결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행사할 것

② 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의 계정에 보유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식 중 조합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협의하여 규약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행사한다.

1. (생략)

2. 해당 주주총회의 참석 주식

제28조(조합의 의결권 행사) ① -

-----.

1. (현행과 같음)

2. -----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
--

② -----

-----.

1. (현행과 같음)

2. -----

수에서 조합의 계정에 보유하 는 주식 수를 뺀 주식 수의 의 결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u>아</u> <u>니하도록</u> 행사할 것 3. (생략) <u><신설></u>	----- ----- ----- <u>아</u> <u>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u> <u>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u> <u>에 따라 의결권을</u> ----- -- 3. (현행과 같음) <u>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결권 행</u> <u>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u> <u>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연 락 처	(044) 202 - 7072